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7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서천호 · 김은혜 · 구자근  
김선교 · 박덕흠 · 이달희  
김승수 · 엄태영 · 이양수  
정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최초 지정된 이후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3개소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권 단위로 하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에도 단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4조제1항),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로 분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과 개발 지연이 발생하는 실정임. 당

초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합 형태로 지정·운영되어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중점 육성산업이 상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시·도 간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분쟁(지자체조합 형태로 번갈아 임명, 제27조의2), 개발계획 수립 지연, 지역별 특성 반영 부족 등의 문제가 상시 발생하여 투자유치 실적 저조와 주변 지역 상권 형성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분리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 정상화와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 ③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제7조의6제2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제4항을”을 “제5항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도별로 분리를 하려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